교 원 경 력 환 산 기 준

연번	경 력 내 용	환산율
1	4년제 대학 전임교원 경력	100%
2	사관학교 및 학사과정의 단기 사관학교 전임교원(교육부장관 인정) 경력	100%
3	교육부에 등록된 국립 특수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기관, 장관의 동의를 받은 중앙공무원 교수직 경력	100%
4	교육부에 등록된 대학과정 각종학교(학력인정교), 초급대학, 전문대학 전임경력	80%
5	대학에서의 담당과목과 부합되는 교육경력(비전임교원, 강사, 각급학교 교육경력 등)	
	가. 대학, 대학과정 각종학교(학력 인정교)의 주당 9시간 이상 강의경력	50%
	나. 초급대학, 전문대학의 주당 9시간 이상 강의경력	30%
	다만, 가 또는 나의 경력이 9시간 미만일 때에는 그 시간수에 비례하여 환산함.	
	다. 유치원, 초등학교, 중고등학교 교원경력 및 공인 체육단체나 각 대학 체육 코치 경력	
	1) 학사이후	50%
	2) 석사이후	70%
	3) “삭제” <2019.08.01.>	
6	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대학 총(학)장의 발령에 의한 조교 경력	30%
7	학위취득 경력	
	가. 석사(2년)	100%
	나. 박사(3년)	100%
	다만, 디자인, 공예, 미술, 음악 계열의 경우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업적을 평가하여 인정함.	
8	국가기관, 공공단체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에서 대학에서의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전임 연구경력	
	가. 학사이후	20%
	나. 석사이후	50%
	다. 박사이후	100%
8-1	대학 및 대학 부속기관(연구소)에서 대학 총장의 발령에 의한 대학에서의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전임 연구경력	
	가. 석사이후	40%
	나. 박사이후	70%
9	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	
	가. 학사이후	70%
	나. 석사이후	80%
	다. 박사이후	100%
10	외교관.판사.검사.변호사.회계사로 근무한 경력	100%
11	공인된 상설 예.체능 및 창작.실기 단체 주요간부 근무경력	70%
12	본교 전임교원이 박사학위 취득시 호봉에 한하여 특별 경력인정 다만, 1988. 9. 1 이후에 임용된 교원은 제외함.	2년
13	6개월 미만의 단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.	
14	합산경력의 1년 미만은 절삭 다만, 부족일수가 15일 이내인 1년 미만의 합산경력은 1년으로 인정함.	

※ 위 9호의 '산업체'라 함은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및「"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"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」에 의거한다. 다만,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환산율을 별도로 지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① 대학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국내·외 저명연구소 및 연구기관에서의 전임 연구경력 중 제8호(제8-1호)에 준하는 수준의 경력으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호(제8-1호)를 준용, 환산율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함.

* 총장발행 증명서와 의료보험, 국민연금 가입사실이 입증되어야하며, 외국대학의 경우 해당국가 연구기관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전임 근로계약이 확인되어야 함

② 위 9호의 실무경력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체 임원경력 또는 고위 공무원 경력에 대하여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위 7호의 단서는 다음의 <별표3-1>에 따라 적용한다.

「교원 인사규정」 <별표 3-1>

디자인, 공예, 미술, 음악 계열 경력 대체인정 적용사항

구분	적용사항
디자인•공예•미술 계열	석사학위 취득 후 "교내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연구 및 실기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300점 이상 취득" 시 인정하며, 위 사항의 인정여부는 신규채용시 해당 단과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. 단, 위 실기업적으로 인한 경력인정은 임용시의 호봉산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, 임용의 자격유무에만 활용한다.
음악계열	(1) 신임교원 경력 인정 프로그램 ① 100% 인정 프로그램 - Konzertexamen - Artist Diploma - Cycle de perfectionnement ② 기타 프로그램 : 60%인정 * 위 프로그램을 취득한 기간에 대하여 100% 또는 60% 인정하되, 인정경력이 200%를 넘지 않도록 한다. 또한 기간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. (2) 교원임용 지원에 있어 경력년수가 부족한 경우,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에 한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음악분야 실기 항목에 해당하는 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. 단, 실기업적으로 인한 경력인정은 임용시의 호봉산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, 임용의 자격유무에만 활용한다. ① 배점표상의 70점이상의 업적물에 한한다. ② 국제업적에 인정점수도 국내업적 배점기준을 적용한다. ③ 2년 이내의 동일한 작품은 인정하지 않는다. ④ 독창회, 독주회의 경우 프로그램이 30%이상 중복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. ⑤ 경력사항에 적용한 항목은 연구업적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.